

# 제작자등 등록 반납 안내

2021. 4

## 국 토 교 통 부 자 동 차 정 책 과

※ 본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통합검색 '제작자등'으로 검색

# 차 례

1. 제작자등 등록 반납 .....	3
2. 제작자등 등록 반납 절차 .....	4
3. 제작자등 등록 반납 구비서류 .....	5
4. 제작자등 등록 반납사실 증명서 발급 및 수령 .....	5
5. 반납 신청 전 자가 진단 .....	6
※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	7
6.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작성 요령 .....	8
7.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작성 예시 .....	11
8. 제작자등 등록 반납 관련 규정 .....	14

## 1. 제작자등 등록 반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제작자등 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1)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①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가 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등록증 반납이 완료된 제작자등은 기술검토, 안전검사, 제작증 정보 전송 등을 할 수 없으며, 제작자등 등록 부활 및 반납철회가 불가하오니 반납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납 신청서 작성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성 오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청서를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 제작자등 등록 반납 절차

□ 소요기간 : 15일

□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우편접수

○ 인터넷 접수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maker.ecar.go.kr](http://maker.ecar.go.kr) → 민원신청 → 등록  
민원 →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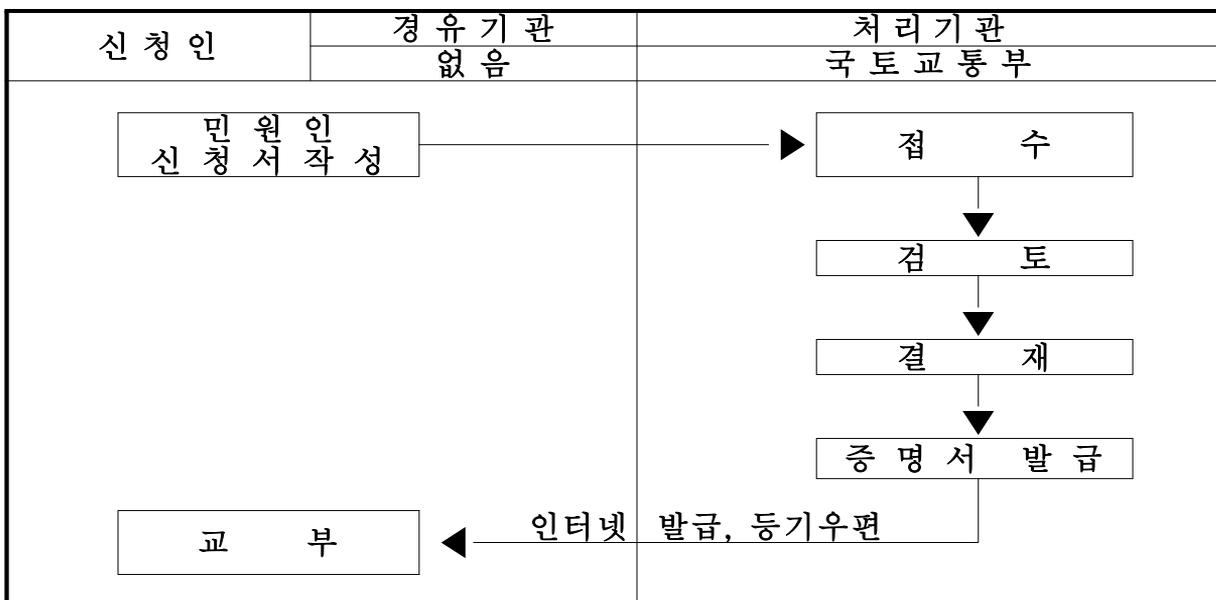
○ 우편 접수

(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제작자등 등록담당(044-201-3845, 3919)

※ 택배로 발송할 경우 분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흐름도



### 3. 제작자등 등록 반납 구비서류

- 1)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1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2)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 분실시 신청서 상단에 ‘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분실’ 자필 기재 후 인장 또는 서명 날인)
- 3)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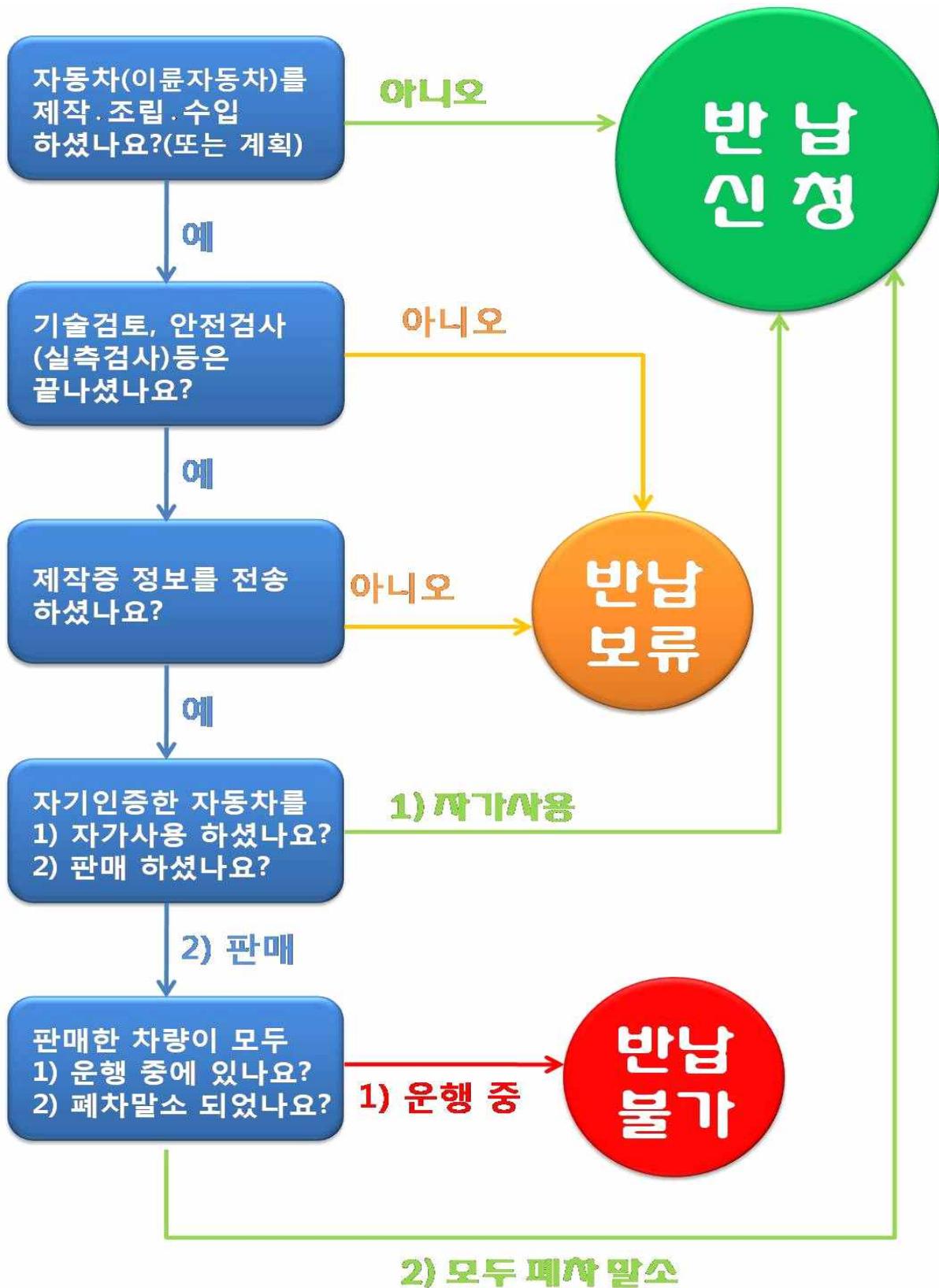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제작자등 등록 신청서를 통해 동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제외

### 4. 제작자등 등록 반납사실 증명서 발급 및 수령

- 제작자등 등록증 반납 신청을 하시면 15일 이내 수리 후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반납 사실 증명서는 신청서상의 주소로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 신청인으로부터 임의로 위임장을 받아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대리 수령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5. 반납 신청 전 자가 진단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명칭) <span style="float: right; font-size: small;">(서명 또는 인)</span>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반납 등록정보	등록번호	
	제작구분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자동차의 종류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반납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input type="checkbox"/> 판매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의 등록정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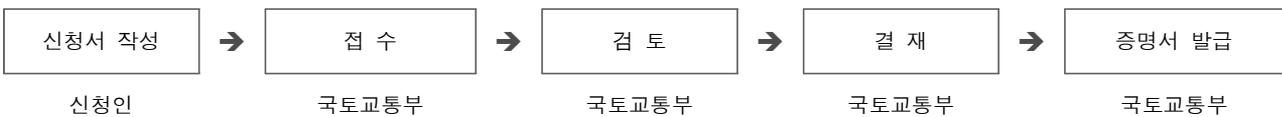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 6.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작성 요령

※ 반드시 신청서상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1) 신청인

#### ① 제작자명(명칭)

-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 법인(사업자)명이 변경되어 신청서와 다를 경우 제작자등 등록 신청시 법인(사업자)명으로 작성, 개인 제작자등이 개명한 경우도 동일

#### ②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기재 불필요.

#### ③ 성명(대표자)

- 법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인 경우 개인 성명 기재

#### ④ 주민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번호 기재(법인은 법인등록번호)

※ 외국인이며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 생년월일 기재

#### ⑤ 주소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 폐업한 경우 '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는 주소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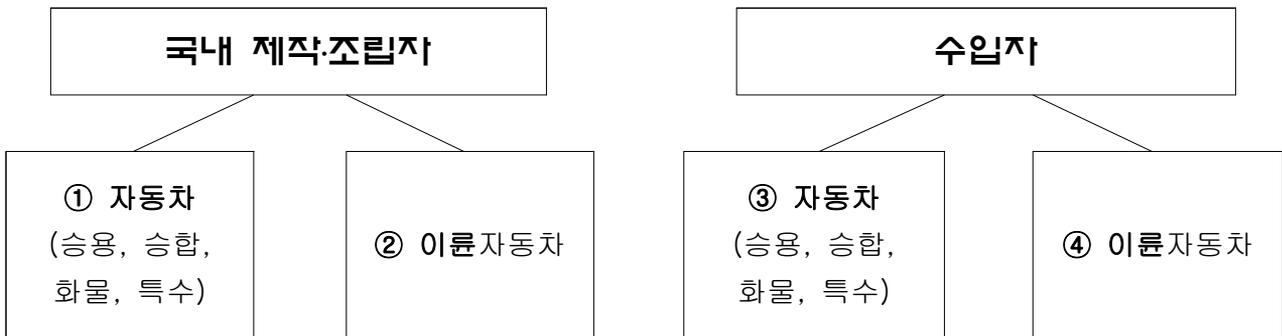
#### ⑥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작성

## 2) 반납 등록정보

- 반납하고자 하는 제작자등 등록증 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단, 복수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제작자등이 일부 등록증만 반납할 경우, 해당 등록증 정보만 작성

예시1) 신청인이 자동차 종류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증과 이륜자동차 제작자등 등록증 두 종류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로 이 중 이륜자동차 등록증만 반납할 경우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만 체크(등록증은 유형별로 4개까지 발급받을 수 있음)후, 해당 제작자등 등록번호만 작성

### 〈 등록증 유형별 분류 〉



예시2) 신청인이 제작구분에 따라 국내 제작·조립자 제작자등 등록증과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증 두 종류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로 이 중 수입자 등록증만 반납할 경우 '제작구분'에 '수입자'만 체크 후, 해당 제작자등 등록번호만 작성

## 3) 반납유형 : 해당사유 체크

## 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 경우 개인 인장 또는 서명 날인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제작자등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서’ 하단의 동의서를 동의 하신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7. 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작성 예시

사례1)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승용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해 제작자등 등록을 한 개인이 반납을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명칭) <b>홍길동</b> (서명 <b>홍길동</b>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b>홍길동</b>	주민등록번호 <b>123456-000000</b>
	주소 <b>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b>	전화번호 <b>044-201-3845</b>
반납 등록정보	등록번호 <b>△△△</b>	
	제작구분 [ ] 국내 제작·조립자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수입자	
	자동차의 종류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승용 [ ] 승합 [ ] 화물 [ ] 특수 [ ] 이륜	
반납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input type="checkbox"/> 판매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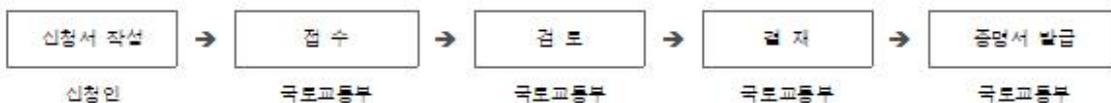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2. 개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의 등록정보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자동차관리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접산정보처리조치를 활용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서명 **홍길동** 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사례2) 수입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자등 등록을 하였으나 판매한 실적이 없는 업체가 반납을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명칭) <b>홍길동 주식회사</b> (서명  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b>1XXXX-000000(123-00-00000)</b>
	성명(대표자) <b>홍길동</b>	주민등록번호 <b>123456-000000</b>
	주소 <b>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b>	전화번호 <b>044-201-3845</b>
반납 등록정보	등록번호 <b>△□□</b>	
	제작구분 <input type="checkbox"/> 국내 제작·조립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입자	
	자동차의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승합 <input type="checkbox"/> 화물 <input type="checkbox"/> 특수 <input type="checkbox"/> 이륜	
반납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input type="checkbox"/> 판매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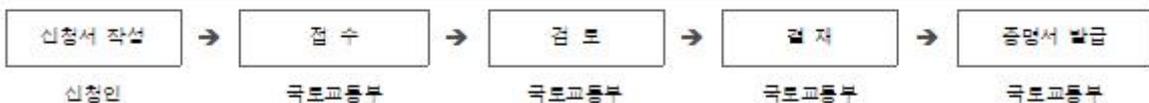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2. 개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발달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용한 자동차(이륜자동차)의 등록정보	없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달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자동차관리법」 제89조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위의 발달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서명  인)

#### 처리절차



210mm×297mm(택상지 80g/㎡)

사례3) 일부만 반납하는 경우 : 자동차의 제작자와 수입자, 이륜자동차의 제작자와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하였으나 판매한 실적이 없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증만 반납을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명칭) 홍길동 주식회사 (서명인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XXXXXXXX-000000(123-00-00000)
	성명(대표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0000000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전화번호 044-201-3845
반납 등록정보	등록번호 △△△, 0000	
	제작구분 [ ]국내 제작·조립차 [✓]수입차	
	자동차의 종류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반납유형	<input type="checkbox"/>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input type="checkbox"/> 판매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1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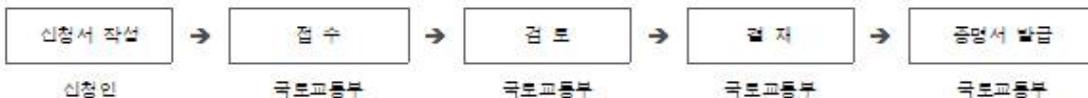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2. 개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한 자동차(이륜자동차)의 등록정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서명인인)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8. 제작자등 등록 반납 관련 규정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3(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조의2에 따른 반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